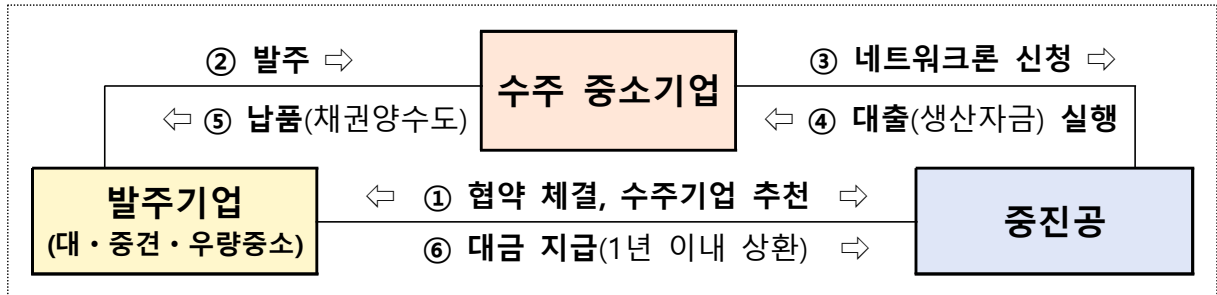


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설명

(2026.03.31., 중진공 경지지지지역본부)

1 사업개요

- **(지원목적)**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·중견·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
- **(지원방식)**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
 -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(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)
 - * 대출금 상환의무 : (납품·채권양수도 전) 수주기업, (납품·채권양수도 후) 발주기업
- **(사업규모)** 1,395억원
- **(운영절차)**



- ① **(협약 체결)** 중진공과 발주기업(대·중견·우량중소) 간 협약 체결 후 발주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
- ② **(계약,발주)**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 납품 계약 체결
- ③ **(대출 신청)** 수주기업의 정책자금 신청, 기업평가 및 용자여부 결정
- ④ **(대출 실행)** 대출약정 체결, 수주기업에 생산자금 지원
- ⑤ **(납품 완료)** 수주기업의 납품 이행, 세금계산서 전송, 채권양수도 약정
- ⑥ **(대출 상환)** 발주기업의 대금 지급으로 대출금 상환

② 지원조건

□ 협약대상

- **(발주기업)** 중점지원분야 사업을 영위 중인 대·중견·우량중소기업, 공공기관
 - * 중점지원분야 : 혁신성장분야(초격차·신산업 포함), 뿌리산업·기술, 소·부장, 지역주력산업
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(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)를 보유하고, 최근 1년 이내 거래 실적을 보유한 수주기업을 10개사 내외 추천 가능한 기업

□ 신청대상

- **(수주기업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지원 추천하고, 최근 1년 이내 발주기업과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
□ 지원 근거 채권

- **(발주서)** 발주기업이 수주기업과 중진공에 전송하는 발주서*로,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
 - * 품목/발주금액/납품기한/발주서만기일/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, 물품구입주문서, 구매승인서, 계약체결확인서, 물량확인증, 연간계약서 등

□ 대출 기간

- **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**
 - *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30~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 가능
 - * 단, 대출기간이 180일 초과 시 발주서상 납품기한으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

□ 대출 한도

- **(건별 한도)**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% 범위 내
- **(연간 한도)** 수주기업 15억원*,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**
 - *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3 이내 (제조업 1/2이내)
 - * 1회당 신청한도(금액)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(회계정보 기준,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)
 - **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150억원 이내, 대기업 200억원 이내

□ 대출 금리

- 정책자금 기준금리 - 0.3%p (수주기업 부담, 신청시기별 변동 가능)
 - * 신용위험등급(발주기업)을 고려하여 이자율 결정

3 기대효과

구 분	내 용
산업 측면	·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·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및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생태계 조성
발주기업 (대·중견 ·우량中企)	· 비용 부담 없이 유연한 결제 관리로 유동성 확보 및 협력사 리스크 관리 · 공급망 경쟁력 강화, 상생협력을 통한 대·내외 이미지 제고 ·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창의·자발적 상생활동 실적으로 활용 가능
수주기업 (중소기업)	· 생산자금 조기 확보로 재투자 및 성장의 선순환 촉진 · 납품 후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 청구하지 않아 연쇄부도 방지

4 기 타

- (공고 및 접수) 2025년 1월 9일(공고문은 중진공 홈페이지 게시)
- (신청방법)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 온라인 신청·접수
- (신청·서비스 절차)



붙임 1

네트워크론 지원 제한기업

구분	적용	내 용
①	공 통 (발 주 · 수 주 기 업)	휴·폐업 중인 기업
②		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③		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,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
④		한국신용정보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⑤		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⑥		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(별표)을 영위하는 기업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사차행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) -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) -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⑦		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-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-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
⑧		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⑨		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(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)
⑩		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- 3년 연속 '이자보상배율 1.0미만'기업 (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(비)율 1.0미만으로 간주)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
⑪	수 주 기 업	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(단, 제조업, 혁신성장·초격차·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)
⑫		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- 유가증권·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 * 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
		【 적용 예외 】 -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100·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

붙임 2

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1)	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(42203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5 中	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